

Korean Tax Update

May 2017, Issue 35

[조세뉴스]

국세청, 제 7 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전문보기]

임한수 국세청장은 2017. 5. 17 (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astead)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 7 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15 년) 과정 및 운영 경험을 공유
- 인도네시아의 최근 조세개혁을 포함한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음.
- 또한, 외국 국세청장 최초로 한국 국세청이 개최하는 국제조세 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인도네시아 국제조세 세정 동향을 설명

국정기획위원회, 전년 대비 2% 이상 직원 채용 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 분과(위원장 이한주)는 27 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힘.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조세유예 대상 중소기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함.
-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 1 억원까지 납세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재창업이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예규·판례]

[판례 1]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 두 22485 판결

-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인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단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판례 2]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 3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 두 1497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괄호 규정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 3 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처음부터 제 3 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로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례 3]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임**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 두 32395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 조의 2 제 3 항에서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9 조 제 1 항 및 제 1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례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처음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 두 37549 판결

-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 두 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임.

[판례 5]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 두 6562 판결

-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 제 3 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

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그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판례 1] 회사가 국가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조심 2017 서 0686, 2017. 5. 12.

- 회사가 국가(기획재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서 회사의 협력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2]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함

조심 2017 중 0437, 2017. 4. 24.

- 청구법인의 경우 2012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이 만료되었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그 후 2개 사업연도(2014·2015)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례 3]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5 서 5019, 2017. 4. 18.

-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증법 제 2 조 및 제 42 조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4]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시설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임

조심 2016 서 3302, 2017. 4. 7.

- 청구법인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가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보면 일차적으로 공기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공기를 기체가스와 액화가스로 분리한 다음 기체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액화가스는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 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 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공장내 기화기와 GSU 를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으로 신고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5] 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심 2016 지 0536, 2017. 3. 15.

-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추가한 업종(제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거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예규 1]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재국조-225, 2017. 5. 16

-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8 호 나목에 따라 해외에 지점(지사)·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 121 조의 2 에 따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 121 조의 3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예규 2]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재산-5786, 2017. 5. 1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 2 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3] 물적 분할에 따른 신설 법인이 舊조특법 제 120 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모회사를 역합병한 경우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 제외대상임

지방세특례-825, 2017. 4. 27.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 합병하여 보유주식을 100 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예기간 내 보유주식을 100 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예규 4]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재부가-228, 2017. 4. 26.

-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 2. 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 4. 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 및 제 49 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 4. 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60 조 제 2 항 제 1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예규 5]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기본-266, 2017. 4. 19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그 국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 「국세기본법」제 47 조의 5 제 1 항 제 2 호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